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412
------	------

2021. 6.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6.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의승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국내 패션산업에는 인력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브랜드가 다수이며, 이들 브랜드는 디자인 역량에 비해 유통망 진입 및 판로 개척 등 판매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서울시는 소규모 패션브랜드에게 제품 전시 및 바이어 수주상담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패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공동판매전시장인 ‘하이서울쇼룸’ 을 조성하여 2015년 11월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음.

다. 2021년 11월 5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나,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의 어려움을 겪는 패션산업의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해 판로지원이 필요하므로 공동판매전시장인 ‘하이서울쇼룸’ 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위 치 : DDP ‘이간수문전시장’ (중구 을지로 281)
- 규 모 : 총면적 1,440 m^2 (지상1층 487 m^2 , 지하1층 953 m^2)
- 시설이용 : 임대차 계약(연간 임차료 968백만원)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하이서울쇼룸(舊 동대문쇼룸) 운영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 2021.11.06. ~ 2023.11.05.(2년)
- 소요예산(안) : 3,000백만원
 - ※ ‘20년 / ‘21년 편성예산 : 3,063백만원 / 2,875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위탁사무

- 국내 생산 기반의 서울 소재 패션브랜드에 쇼룸 공간 지원
- 입점기업 대상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입점 패션브랜드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동대문 상권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
-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발굴 등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1.5.17.)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제1항 제3호

제54조의 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패션브랜드 공동전시 판매시설인 ‘하이서울쇼룸’의 민간 위탁 기간만료일(2021.11.05.)이 도래¹⁾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나. 하이서울쇼룸 현황 및 성과

- 하이서울쇼룸은 국내생산 기반 패션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지원을 위해 쇼룸공간 지원, 국내외 바이어 연계, 패션쇼 개최 등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5년부터 한차례 재계약을 거쳐 6년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간수문전시장을 임대해 입점 패션브랜드의 의류와 잡화 등을 전시·판매·홍보를 하고 있으며, 최근 V-커머스²⁾, 네이버TV,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으로 유망 패션 소기업과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매출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바이어를 포함한 방문객이 극감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과 판매 지원을 강화했음.
 - 외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고, 비대면 해외시장으로의 점차적인 저변확대를 위해 사업컨설팅, 수주지원, 온라인플랫폼 판매 지원 등을 집중 추진했음.

2) 비디오커머스라고도 불리며 판매촉진을 위해 비디오 콘텐츠를 활용함. 이들 업체들은 크리에이터들로 하여금 제품을 직접 시연하게 하여 소비자가 간접 체험을 하는 효과를 동영상 통해 보여줌으로써 매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함.

< 2020년 하이서울쇼룸 사업 주요성과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업체수(개)	186	258	200
매출액(백만원)	15,135	14,616	6,253
방문객수 (바이어 포함, 명)	38,315	33,621	3,737

-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는 현재 175개사로 올해 83개사가 신규입점 신청을 해 38개사가 최종 선정 되었음.
- 그러나 매출이 전혀 없는 입점기업이 39%³⁾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브랜드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합한 입점기업 선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입점 기업 수 등 양적확대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쇼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과 내용을 재검토해야 하며, 적합한 업체선정을 위해 평가인원의 적정성⁴⁾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다. 재위탁 타당성 검토

- 진흥원은 수의위탁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하이서울쇼룸 사업기획과 운영사 관리감독 등 총괄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3년의 민간위탁

3) (2019년도 기준) 지원기업 258개사 중 87개사

4) 하이서울쇼룸 신규 입점심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시연해 가능성을 타진받고 최종 입점여부를 결정함. 그런데 서류심사부터 브랜드별 20개 이상의 제출된 제품을 평가하기까지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해 심사를 한 것으로 확인됨.

계약기한이 종료되는 2018년 재계약해 올해 6년째 사업을 수행 중임.

- 사무형 위탁사업인 하이서울쇼룸은 동일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장기수탁⁵⁾이 가능하나, 진흥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됨.

< 위탁유형에 따른 재계약 제한 >

구 분	시설형	사무형
위탁기간	3년 이내(민간위탁조례 제11조)	
재계약 제한	재계약 1회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그동안 하이서울쇼룸 운영은 사업기획과 총괄기능은 진흥원이 담당하고, 상품 기획, 바이어 관리 및接客, 수출입 업무와 물류 지원 등 운영 실무는 외부용역을 통해 분업하는 이원화 구조였음.
- 실제 진흥원 소속 직원 2명과 운영용역사⁶⁾ 소속 11명이 하이서울쇼룸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나, 진흥원은 쇼룸 전담 인력을 구성한 것이 아닌 순환 보직으로 잦은 교체가 있어 사실상 전반적 운영관리는 운영 용역사가 수행하였음.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p.59 (2021.2.)

6) 운영용역사인 (주)제이케이디자인랩은 패션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로 패션 산업 트렌드 분석, 국내외 판로 개척, 디자인개발 등 패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임.

< 운영용역 추진현황 >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6항 단서
 -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사무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 가능
- 판단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별첨7 ‘제3차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 ▶ 용역금액이 위탁금액의 50% 초과(양적기준), 용역사무가 위탁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질적기준)이면 제3차 재위탁에 해당돼 불가
 - 용역금액은 약 23%, 용역업무는 쇼룸 관리, 상품 전시 등 부수적 업무이므로 제3차 재위탁에 해당되지 않음(문화융합경제과-6379, 2018.6.25.)
- 용역사: (주)제이케이디자인랩
- 용역기간: 2019.01.01. ~ 2021.11.05.
- 용역비용: 연간 701,304천원
- 용역내용: 쇼룸 유지관리, 시즌별 상품전시, 바이어 관리, 패션동향 수집 등

- 하이서울쇼룸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진흥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나, 패션산업은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진흥원이 수탁을 계속받는 현재의 운영구조는 민간위탁 수행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하이서울쇼룸 이원화된 운영구조 >

구분	서울산업진흥원 (사업기획 및 총괄)	운영용역사 (유지·관리 기능)
역할	-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관리 - 쇼룸 참가기업 모집/선정 - 국내외 유통 협력사 발굴 - 운영사 관리감독 등	- 상품 기획 및 시즌별 VMD ⁷⁾ - 바이어 관리 및接客 - 입점 디자이너 발굴 및 상담 - 수출입 업무 및 물류 지원

-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만큼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패션브랜드 육성에 경험이 풍부한 곳이

7) [visual merchandiser] 브랜드 컨셉트에 맞춰 제품을 전시하는 등 매장 전체를 꾸미는 업무로 매장을 새로 낼 때 어느 위치에 어떤 컨셉트로 만들어야 효과적일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주력 제품도 결정한다.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12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국내 패션산업에는 인력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브랜드가 다수이며, 이들 브랜드는 디자인 역량에 비해 유통망 진입 및 판로 개척 등 판매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나. 서울시는 소규모 패션브랜드에게 제품 전시 및 바이어 수주상담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패션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공동판매전시장인 '하이서울쇼룸'을 조성하여 2015년 11월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음.
- 다. 2021년 11월 5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나, 코로나19로 매출급감의 어려움을 겪는 패션산업의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해 판로지원이 필요하므로 공동판매전시장인 '하이서울쇼룸'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위치 : DDP '이간수문전시장'(중구 을지로 281)
- 규모 : 총면적 1,440 m^2 (지상1층 487 m^2 , 지하1층 953 m^2)
- 시설이용 : 임대차 계약(연간 임차료 968백만원)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하이서울쇼룸(舊 동대문쇼룸) 운영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 2021.11.06. ~ 2023.11.05.(2년)
- 소요예산(안) : 3,000백만원
 - ※ '20년 / 21년 편성예산 : 3,063백만원 / 2,875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위탁사무
 - 국내 생산 기반의 서울 소재 패션브랜드에 쇼룸 공간 지원
 - 입점기업 대상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입점 패션브랜드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동대문 상권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동대문상권 활성화 지원
 -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발굴 등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1.5.17.)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제1항 제3호

제54조의 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도시제조업거점반 패션정책팀 권준일 (☎ 2133-8777)